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산업기밀 침해죄 규정 및 형사절차상 특례 마련〉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18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	3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3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6
2. 조문별 검토	9
가. 제명 및 총칙(제1장)	9
나.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제2장)	15
다. 형사절차상 특례(제3장)	23
※ 참고자료	3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경태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4.
3. 회부연월일 : 2026. 3.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국가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밀의 해외 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음. 이러한 산업기밀 유출은 개별 기업의 재산적 손실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을 통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분산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외국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기밀 침해행위를 국가·경제안보 침해행위로 포괄하여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외국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그 피해는 사후적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가의 전략적 산업 기반과 국제 경쟁력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을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닌 국가·경제안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이 법안은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 및 침해행위를 ‘경제안보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기밀의 범위를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이에 준하는 기술로 한정하고, 외국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며, 외국인의 경영상 지배 관계를 포함함으로써 우회적 유출에 대한 규율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가 핵심 산업과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우리나라는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의 지정, 각종 실태조사, 보호조치 및 처벌규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해오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술보호체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 5년간 적발된 기술유출 범죄 사건, 특히 해외유출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 1] 최근 5년간 국내외 기술유출 범죄 검출송치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89	104	149	123	179
산업기술보호법	9	11	16	19	22
부정경쟁방지법	72	78	93	86	118
형법 등	8	15	40	18	39
국 내	80	92	127	96	146
해 외	9	12	22	27	33
산업기술보호법	9	11	16	19	22
부정경쟁방지법	72	78	93	86	118
형법 등	8	15	40	18	39

주: 연도별 검출 송치 건수

자료: 경찰청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 핵심 부품 공정자료 해외유출시도 등 2025년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로 유출되거나 유출 시도가 적발

된 기술은 반도체(5건), 디스플레이(4건), 이차전지(3건) 등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¹⁾.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경제성장 동력 및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재산상 손실을 넘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와 국가경제기반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각종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으나,

각 법률별로 보호대상과 처벌범위 및 기준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외로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유출·침해하는 행위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통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1) “경찰청, 2025년 기술유출 범죄 단속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보도자료(2026. 1. 20.)

이에 동 제정안은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비밀 등을 ‘산업기밀’로 정의하는 한편, 이러한 산업기밀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를 ‘경제안보 침해죄’로 규정하고, 산업기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법률에 비해 높은 수준의 처벌(7년 이상의 징역 및 10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공소시효 특례·비밀유지명령 등 형사절차상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핵심기술 및 산업기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다만, 현행 법체계는 보호대상별 보호법익 수준과 기술 중요도에 따라 기술보유자의 의무, 보호조치 및 처벌수준 등을 차등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이를 모두 ‘산업기밀’로 묶어서 일률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는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제정안의 목적 및 취지에 공감하나,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영업비밀은 각각 보호법익 및 성격이 상이하므로 이를 단일한 개념으로 포괄하여 동일한 체계로 규율하기보다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기준 강화, 형사절차상 특례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므로, 동 제정안 심사시에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총 3장,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기밀의 국외유출을 경제안보 침해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형사절차상 특례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제1장 총칙에서는 동 제정안의 입법목적과 ‘산업기밀’ 및 ‘외국’ 등 법률의 주요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산업기밀의 해외유출 및 침해죄 및 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며, 미수죄, 예비·음모죄, 몰수·추징 및 양벌규정을 마련함.

제3장에서는 산업기밀 보유자 등의 의견진술 및 절차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공소시효 특례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상 특례를 규정함.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함.

[표 2] 제정안 목차

장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	조문
제2장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제4조(경제안보 침해의 죄)
	제5조(예비·음모)
	제6조(몰수·추징)
	제7조(양벌규정)
제3장 형사절차상 특례	제8조(산업기밀 보유자의 의견진술 등)
	제9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0조(비밀유지명령)
부칙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목적 및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기밀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산업기밀’을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비밀로 정의하는 한편, 외국정부나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단체까지 ‘외국’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우회유출가능성이 없도록 기술보호체계를 면밀하게 구축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2조).

둘째, 경제안보 침해행위 규정 및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산업기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고의로 산업기밀을 부정

하게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범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0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수준을 높게 규정하며(안 제4조),

미수죄, 예비·음모죄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기밀의 해외유출을 계획 또는 착수하는 단계에서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규정을 통해 경제안보 침해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며, 양벌규정에 따라 관련 법인 등의 책임도 명확하게 부과하고자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셋째,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상 특례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산업기술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수사 및 재판절차 참여 및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기밀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고, 재판과정에서 산업기밀 보호를 위하여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2.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및 총칙(제1장)

제정안의 제명은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안 제1조(목적)는 산업기밀 유출행위 등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정의)는 보호대상인 ‘산업기밀’과 유출방지범위인 ‘외국’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경제안보 침해의 죄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형이 이 법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

[표 3]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기밀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제정안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중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2. “외국”이란 외국 정부, 외국 법인·단체(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및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외국인, 그 밖에 외국 정부, 외국 법인·단체 또는 외국인 등이 사업 운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제안보 침해의 죄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형이 이 법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1)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먼저, 제명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기밀 침해행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및 형사절차상 특례를 부여한 특별법임을 나타냄.

다음으로, 목적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산업기밀의 국외유출 및 침해 행위 방지 및 처벌강화”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입법취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기밀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그치지 않고, 경제안보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보호법익인 것으로 보고 이를 보다 엄격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나타낸 것임.

2) 정의(안 제2조)

제정안은 보호대상인 ‘산업기밀’과 유출방지범위인 ‘외국’의 개념을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

먼저, ‘산업기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중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현행법상 정의규정은 참고자료 참조)로 정의되며,

이는 개별 법률에서 각각 보호하고 있는 대상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처벌수준을 높임으로써 산업기밀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재 산업통상부 소관의 기술보호법률은 보호법익과 기술 중요도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 순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보호체계 및 처벌수준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각종 신기술을 ‘산업기술’로 지정·고시·공고·인증하고, 그 중에서도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국가핵심기술’을 별도로 지정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음.

그리고 지식재산처 소관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적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는데 비해,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기술보호법률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제정안과 같이 해당 기술 및 비밀을 동일한 범주로 포괄하여 규율하고 일률적으로 처벌수준을 높이는 방식이 기존 법체계와의 관계, 보호법익 및 행위 태양에 따른 제재수준의 적정성·균형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²⁾ 및 관련 협회³⁾는 산업기밀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대상 및 보호법익의 성격 및 수준에 따라 개별 법률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므로, 향후 동 제정안 심사시에 이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외국’은 외국정부, 외국법인·단체 외에도 자연인인 외국인 등도 포함하는 한편, 이로부터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법인·단체

2) 추가로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이 특정 산업·기술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개념이며 경제안보 기준으로 산업기밀을 선별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3) 관련 기관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	의견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 보호협회 (‘26.3.23)	- 반대(동의곤란) -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영업비밀 중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등은 각각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정보를 하나의 ‘산업기밀’로 묶어 동일한 처벌규정 체계를 갖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

도 포함하여 정의됨.

이는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산업기밀을 유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국내 법인·단체를 통한 간접 유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산업기밀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실제 산업기밀 유출은 다양한 우회적 거래 및 지배구조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외국’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산업기밀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외국’ 용어는 지리적 영역이나 국가의 주권 범위를 의미하기 보다는 행위주체인 외국정부, 외국법인·단체 및 외국인 등을 포괄하여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정의규정의 실제 내용에 맞추어 ‘외국인등’으로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제정안은 외국의 간접 지배를 받는 국내법인·단체를 경유한 산업기밀 유출도 해외 유출로 보고 이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하는데, 간접지배 범위 및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형사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법적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 경영지배 여부 등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제정안은 경제안보 침해행위 처벌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적용하되, 다른 법률에서 정한 형이 더 중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

이에 따라 동 제정안은 경제안보 침해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되며, 산업기밀 해외유출에 대해서 기존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침단전략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보다 강화된 처벌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보다 중한 형을 정한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안보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나.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제2장)

1) 경제안보 침해죄 규정 및 처벌 강화(안 제4조)

안 제4조는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산업기밀을 취득·사용·공개·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0억원 이하의 벌금에 병과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착수한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함.

[표 4]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4조(경제안보 침해의 죄) ① 산업기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절취·기망·협박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산업기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산업기밀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산업기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밀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산업기밀 보유자로부터 산업기밀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나 산업기밀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4. 산업기밀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산업기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밀을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산업기밀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밀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우선, 안 제4조제1항은 고의로 산업기밀을 해외유출,한 경우에 대해 7년 이상의 징역 및 10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법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함.

이에 따라 경제안보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면서 산업기밀 해외유출을 억제하고 국가경쟁력 약화 및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5] 현행 법률별 산업기밀 유출시 벌칙 조문

구분	보호대상	해외사용고의/목적 유출	일반 유출
「산업기밀 보호법」 §36	산업기밀· 국가 핵심기술	○ 국가핵심기술: 3년 이상 징역 +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 ○ 산업기밀: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일부 유형(12·1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국가첨단 전략산업법」 §50	국가첨단 전략기술	○ 국가첨단전략기술: 5년 이상 징역 +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 -일부 유형(5~8호):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일부 유형(4·8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부정경쟁 방지법」 §18	영업비밀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재산상 이득액의 2배~ 10배 벌금 부과 가능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재산상 이득액의 2배~ 10배 벌금 부과 가능

다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정상참작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최소 3년 6개월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여야 하고4),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⁵⁾는 행위 유형의 폭이 매우 넓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하한을 7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4)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2021헌가9, 2023. 2. 23.,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

【전문】 - 【이 유】 - 4. 판단

나.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2) ... (중략) ...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정하였던 2020. 5. 19. 개정 이전의 구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과 달리 그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함으로써,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된다. 이 점에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작량감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던 위 결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였던 기존 조문에 대한 합헌결정)들은 이제는 추종할 수 없게 되었다.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성폭력범죄를 행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불법과 책임이 중하게 평가되고,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행위 중에서도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 못지않게 죄질이 나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높게 규정함으로써 불법과 책임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미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까지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7)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이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제청법원들과 청구인들은 평등원칙 위반도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정의규정상 산업기밀에는 보호법익 및 중요도 층위가 다양한 기술 또는 정보가 포함되고, 침해행위 역시 절취·기망·협박 등의 적극적인 유출행위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밀의 목적·권한 외 사용·공개행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책임 비례성 및 처벌수준의 적정성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안 제4조제2항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는데, 실제 산업기밀 유출에 실패하더라도 실행 착수 단계에서 보호·관리체계가 약화되고 국가·경제안보 및 산업경쟁력에 위협한 상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미수범 역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두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아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이를 신설하려는 개정안⁶⁾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점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의안번호 제221658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2026. 2. 5. 발의

2) 예비·음모죄 및 몰수·추징, 양벌규정 마련(안 제5조~제7조)

안 제5조는 산업기밀 침해죄를 예비·음모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병과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산업기밀 침해죄에 따른 범죄수익 및 이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기밀 침해죄를 범한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

[표 5]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5조(예비·음모) 제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6조(몰수·추징) ① 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선, 예비·음모죄 처벌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범죄실행에 착수하기 이전 단계라 하더라도 산업기밀 유출을 위한 계획이나 공모가 이루어진 단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자 함.

계획·공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호·관리체계의 약점이 노출되고 실질적인 유출 위험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예비·음모죄 역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미 예비·음모죄 처벌 규정이 있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아직 예비·음모죄 처벌 규정이 없지만 이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⁷⁾되어 있거나 소위에 계류⁸⁾ 중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몰수·추징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산업기밀 침해죄로부터 얻은 수익이나 범죄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함으로써 범죄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자 함.

각종 유출·침해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외에도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함으로써 범죄행위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반하도록 하므로, 범죄유인을 억제하고 예방효과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의안번호 제221658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2026. 2. 5. 발의

8) 의안번호 제2214685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2025. 11. 28. 발의

그리고 안 제6조제2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특정·추적·환수 및 집행에 필요한 절차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데,

산업기밀 침해죄 특성상 범죄수익이 해외 또는 제3자로 은닉·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정안과 같이 관련 절차 및 집행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⁹⁾으로써 범죄수익 환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미 몰수·추징 규정이 있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아직 몰수·추징 규정은 없으나 이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¹⁰⁾되어 있거나 소위에 계류¹¹⁾ 중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준용조문 목록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제9조(몰수의 요건 등)

제10조(추징)

제10조의3(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제11조(국제 공조)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10) 의안번호 제221658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2026. 2. 5. 발의

11) 의안번호 제2214685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2025. 11. 28. 발의

마지막으로, 양벌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행위자 본인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산업기밀 침해죄는 행위자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경쟁 기업 등의 업무수행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제정안과 같이 위반행위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미 양벌규정이 있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아직 양벌규정은 없으나 이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¹²⁾되어 있거나 소위에 계류¹³⁾ 중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 의안번호 제221658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2026. 2. 5. 발의

13) 의안번호 제2214685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2025. 11. 28. 발의

다. 형사절차상 특례(제3장)

1) 산업기밀 보유자의 의견진술 등(안 제8조)

안 제8조는 산업기밀 침해죄의 대상이 된 산업기밀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압수물 선별 및 분석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보전 후 또는 소송 중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함.

[표 8]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8조(산업기밀 보유자의 의견진술 등) ① 제4조의 죄의 대상이 된 산업기밀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산업기밀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 선별 및 분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산업기밀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산업기밀 보유자는 또는 그 대리인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우선, 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은 산업기밀 보유자 등이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으로,

현재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각종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해자(산업기밀 보유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으로서 대질¹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의견제출 기회는 「형사소송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¹⁵⁾에 따라 보장하고 있으며, 재판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¹⁶⁾ 등에 따라 의견진술권을 보장함.

제정안은 산업기밀 보유자 등의 의견제출 또는 진술 기회를 법률상

14) 「형사소송법」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1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자료·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16)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07. 6. 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음으로, 안 제8조제2항은 압수수색 과정에 산업기밀 보유자 등이 관련 자료의 선별 및 분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산업기밀 침해행위는 압수대상 자료의 기술적 의미, 산업상 가치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산업기밀을 보유한 피해자 측의 의견을 참고함으로써 압수수색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수사절차인데, 피해자측의 참여방식에 따라서는 수사의 객관성·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피의자의 별개 산업기밀이 역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4항은 산업기밀 보유자 등에 대해 증거보전 후 또는 소송 계속 중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등사를 허용하려는 것임.

2025년 9월부터 형사소송기록의 열람·등사가 원칙적으로 허가되고 있으나¹⁷⁾¹⁸⁾, 제정안에 따르면 산업기밀 침해죄에 관한 형사소송은 재판장의 허가가 아닌 법률에 따라 관련 자료를 안정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되고, 수사단계에서도 증거보전 중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됨.

침해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피의자 또는 제3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산업기밀 보유자가 피해경위나 사용 여부 등을 독자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및 피해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7) 2025. 9. 19.부터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개정).

출처: <https://www.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category=&page=6&seq=14913&types=1007&searchtype=&searchstr=>

18)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의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형사절차를 통해 확보된 자료가 별도 민사상 분쟁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정한 열람·등사 범위 등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공소시효 특례(안 제9조)

안 제9조는 산업기밀 침해죄의 공소시효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와 동일하게 15년으로 규정함.

[표 8]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9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4조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년으로 한다.

안 제4조는 산업기밀 침해죄를 범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유기징역의 상한에 따라 장기 30년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¹⁹⁾에 따른 공소시효는 10년임.

19)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그러나 제정안은 산업기밀 침해죄의 중대성과 범행의 은닉성, 해외 유출에 따른 사후 적발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일반적인 유기징역 범죄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산업기밀 침해행위에 대한 장기적 추적·수사가 가능해지고 범죄 억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산업기밀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국가첨단전략기술부터 일반 영업비밀에 이르기까지 보호법익의 범위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제정안은 공소시효를 일률적으로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 책임에 따른 비례성 및 피고인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 필요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비밀유지명령(안 제10조)

안 제10조는 법원이 직권 또는 산업기밀 보유자의 신청으로 산업기밀을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표 8]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0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4조의 죄에 관한 소송에서 산업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산업기밀을 보유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밀

제정안
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산업기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산업기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과 그 취소,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에 관한 소송기록 등에 관하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 및 제18조의4의 규정²⁰⁾을 준용한다.

제정안은 소송과정에서 산업기밀을 알게 된 소송 관계인이 이를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절차 및 위반시 제재수단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

이에 따라 소송관계인의 소송절차 참여와 산업기밀 보호간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산업기밀 관련 형사소송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미 비밀유지명령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별도 특별법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56

20) 준용조문목록

-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라. 삭제 <2025. 1. 21.>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카.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3.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5. 해당 기술이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참고 2

최근 주요 기술유출 사건 처벌사례

□ (반도체 분야) 반도체 HKMG 핵심기술 유출

피해기업	국내 반도체 대기업 ㄱ사
유출기술	국가핵심기술(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유출방식	ㄱ사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A씨가 퇴사 직전 도중 반도체 공정 관련 자료 4,000여 장을 출력 후 무단 반출하여 중국 IT 기업 ㄴ사에 유출
진행상황	대법원 판결 확정('25.8)
처벌	1심('24.11) :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만원 선고 2심('25.5) : A씨에게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선고 3심('25.8) :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 확정

□ (디스플레이 분야) 스마트폰 OLED 엣지패널 기술 유출사건

피해기업	국내 디스플레이 대기업 ㄱ사		
유출기술	① 영업비밀 (OLED 곡면 합착기술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		
유출방식	ㄴ사의 대표인 A씨는 ㄱ사와 공동개발한 OLED 엣지 패널 설비 관련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였으나, ㄱ사의 반대로 무산되자 A씨의 가족 명의로 별도의 법인 ㄷ사를 설립한 후 중국 ㄹ사로 우회 수출을 시도		
진행상황	대법원 판결 확정('23.7)		
처벌	<피고인별 세부 판결 형량>		
	구분	피고명	판결 형량
	주범	A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공범	B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C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D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E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F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G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H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I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양벌	ㄴ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
		ㄷ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

□ (자동차분야) 자율주행 관련 라이다(LIDAR) 기술 유출 사건

피해기업	국내 소재 ㄱ대학
유출기술	① 첨단기술 (스마트카 분야 차량용 레이저 레이더 기술), ② 첨단기술 (시스템 분야 지사·본사간의 안전한 네트워크 접속기술 및 종단간 암호화 기술), ③ 첨단기술 (소자모듈 분야 Access Network용 DSP 등), ④ 영업비밀 (레이더 기술 관련 연구자료)
유출방식	ㄱ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A씨가 ㄱ대학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권한을 중국 ㄴ대학의 교수 및 연구원들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라이다(LIDAR) 연구자료 등 첨단기술을 유출
진행상황	대법원 판결 확정('24.5)
처벌	1심('21.8) : 사기·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심('24.2) : 사기 및 업무방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어 A씨 징역 2년 선고 3심('24.5) :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확정 판결

참고 3

기술유출 관련 해외 주요국 처벌 수준

- **(미국)** 영업비밀을 외국 정부·기관 등의 이익이 될 것을 알거나 의도한 절취·복제·전달 등 행위에 대해 **20년 이하 징역, 500만 달러(약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Economic Espionage Act, 18 U.S.C. §1831)
- **(일본)** 영업비밀을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 또는 알면서 침해·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3천만엔(약 28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부정경쟁방지법 제21,22조)
- **(대만)**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중국·홍콩·마카오 사용 목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12년 이하 징역, 1억 대만달러(약 45억원) 이하 벌금**(국가안전법)
- **(중국)** 영업비밀을 외국을 위해 불법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및 벌금*** 병과,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벌금** 병과(형법)
 - * 벌금 상한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관이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독일)** 영업비밀을 외국 공개하는 등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영업비밀보호법)
 - * 독일 형법 체계상 벌금형의 상한선이 법률에 특정 금액으로 고정되지 않음
- **(영국)** 영업비밀을 외국을 위해 취득·공개하는 등 행위에 대해 **14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National Security Act)
 - * 「법률구조, 양형 및 범죄자 처벌법」 개정('15.3)에 따라 기존 5천파운드(약 1천만원)의 벌금액 상한 폐지